2020. 11 Vol.15

P&B Report

Policy & Business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위원회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교통위원회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SAMPLE

P&B Report 구성 소개

주요 구성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별첨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SAMPLE

Contents

Ⅰ. 발의

08 **1. 발의 법률안 목록**

18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19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21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2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2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4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5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26 8)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회

27 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8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11)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1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33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34 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회

35 1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36 16)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7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38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39 1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41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43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SAMPLE

II. 소위원회

46 **1. 상정 법률안 목록**

48 **2. 주요 법률안 소개**

기획재정위원회

48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1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52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6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60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61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4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6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대표발의)
6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69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의원 대표발의)
71 1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회

7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76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9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81 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86 16)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88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90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94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III. 상임위원회

100 **1. 상정 법률안 목록**

107 **2. 주요 법률안 소개**

기획재정위원회

107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110 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SAMPLE

112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114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116 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118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국방위원회
122 7)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124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7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129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130 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2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대표발의)
134 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회
138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0 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41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142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43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145 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146 2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대표발의)
149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150 2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52 2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155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56 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159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162 별첨. 1. 용어해설
165 2. 국회일정표

SAMPLE

B&B Report

Ⅰ.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SAMPLE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법관징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0.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3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인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1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정무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896호



윤영찬

선 거 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1.03 제안

제안이유

2020년 1월 가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나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개정으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이 통합되었으나 일부 규정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로 존치됨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호 및 제6호).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39조의3, 제39조의5 및 제39조의7 삭제).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제39조의15 삭제, 제64조의2 신설).

SAMPLE

정무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548호



박용진

선 거 구 서울 강북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0.16 제안

제안이유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함으로써 재벌들이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음.

심지어 일부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재산을 사실상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SAMPLE

정무위원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916호



배진교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1.03 제안

제안이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의 위험성을 목도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조건부로 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적합업종까지 진출하여 이들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일감몰아주기와 결합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

이에,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의결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상장 20% 및 비상장 40% 이상에서 상장 30% 및 비상장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위한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부칙 제2조).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통지받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해소하지 못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부칙 제3조).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당해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등을 결의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주식발행총수의 15%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을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삭제).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특수관계인 합산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가 소유한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와 그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 을 귀속시키는 행위'로 수정하고, 긴급성·효율성·보안성 등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3조의2).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71조제1항 삭제).

정무위원회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213호



임오경

선 거 구 경기 광명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1.11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1985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최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확대하고, 발주자가 대기업인 경우 그 목적물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도록 함(안 제2조).

나.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적어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방자치단체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정권 및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4).

라. 하도급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SAMPLE

기획재정위원회

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213호



심상정

선 거 구 경기 고양시갑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0.15 제안

제안이유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하였음.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토지 중 상위 1%가 13.8%, 상위 10%가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 보유 주택·토지 중 상위 1%가 87.6%,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함(안 제9조제7항).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SAMPL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772호



조명희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0.2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은 전 세계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함.

이와 같은 구글의 정책에 대하여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컨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앱·콘텐츠의 소비자 가격이 20~30% 가량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해지·환불 등에 관한 분쟁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고, 금지사항의 유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제6호 및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주요발언

국정감사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단하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구글 이슈가 되고 있고 인앱 결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요. 인앱 결제 30% 수수료. 근데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면 그 자체도 그 가격 수수료는 고객한테 전가가 일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아까 송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수수료율이 높으면……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짧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통 이것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구글의 지금 시장점유율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지요, 64%?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하나의 업체가 있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SAMPLE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그러면 공정거래법 3조의2 제1항제1호를 보면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수수료 자체가 용역의 대가지요. 앱을 등록하는 용역의 대가지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어떤 변경을 하는 행위 자체 그리고 그것은 자사결제시스템을 사용 강제화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걸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보면 본 위원은 공정거래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기에 있는 용역의 대가의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율이나 수수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 이건 수수료율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변경해서 그 안에 있는 가격을 변화시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그러니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법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경쟁을 저해한다는 게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는 행위 자체잖아요. 그전에 있던 수수료가 아닌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안이 죽 진행 되어 가지고 검토만 하고 있다가 실제 시장지배질서 자체가 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해져요. 특히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산업에 있어 가지고는. 이럴 때 공정위가 빠르게 조사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명확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주장했듯이 미국 하원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어제 발표된, 저도 봤지만,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 가지고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 지배력을 가졌을 때 그 파괴력은 훨씬 크고, 사실 공정거래법의 근간인 엔트러스트법 자체가 1912년부터, 그걸 분할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지금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빨리 행사를 하셔서 다른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을 막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예, 저희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인 그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것 빠르게 검토를 하셔서 일단 종합감사 전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AMPL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811호



김영식

선 거 구 경북 구미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1.02 제안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차별적 지원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32조의10부터 제32조의14까지 신설 등).

SAMPL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543호



김영식

선 거 구 경북 구미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0.16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 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이며, 해당 산정기준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시행령은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과거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새로운 산정기준으로 임의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법적인 기준 없이 과거의 할당대가를 무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주요내용

적절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적정 주파수 가치가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SAMPLE

B&B Report

Ⅱ.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SAMPLE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33. 사회적경제기본법안
		3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35. 재정건전화법안
		3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3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6.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제2103340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8.31 제안
2020.11.06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11.10 상정

제안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i)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안 제5조)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

ii)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안 제73조의2제4항)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iii)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 신설

(ㄱ)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적용(안 제75조의11 신설)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

(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설립 및 해산 등(안 제75조의12 및 제75조의13 신설)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정하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

SAMPLE

(ㄷ)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계산(안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신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탁의 합병·분할을 법인의 합병·분할로 보고,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

(ㄹ)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납부 및 징 수(안 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 신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호 및 제57조)

i)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ii)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함.

라. 기부금 조문체계 정비 및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개선(안 제24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

마. 합병·분할 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신설(안 제45조제6항·제7항 및 제46조의4제6항·제7항 신설)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합병·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함.

바.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63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안 제75조의7제1항)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제16항·제17항 신설, 안 제98조제1항제8호)

i)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여 발생하는

SAMPLE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ii) 국제세원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안 제120조의2 제1항)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함.

주요발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세법 관련해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일종의 간주배당소득 과세제도를 하겠다는데, 이것이 67년에 도입되고 85년에 폐지된 지상배당 과세제도, 그것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것이 결국은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를 저해해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또 기업자금 운영 부담주고, 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배당받지 못한 미실현 소득에 과세한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겁니다.

그게 정부의 당시 분석이었는데 유사한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킨다, 여기에 대한 여러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 또는 문제 제기는 많이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문제를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정상적인 기업 활동 또 투자를 위축시킨다, 해외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해외 유턴 기업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상적인 주주 배당 활동마저도 저해할 것이다 등등……

아시다시피 기업은 유보소득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은 일부 있고 대부분은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등 실물로 있는 경우가 많고 회계상에 유보소득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일부 문제 행태를 갖고 세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10억, 3억, 한창 논란하다가 10억 그대로 간다, 그런데 합산은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를 할 텐데, 여기에는 규모의 문제, 10억, 3억의 문제도 있었지만 현 대판 연좌제라고 하는 직계 존비속을 가족 합산하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요즈음 가족 간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알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면서 서로 투자를 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만간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부 나중에는 거래세는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양도소득세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고, 그게 아주 규모가 컸을 때는 일부 이해가 되는데 이제 10억까지 왔으면 많이 왔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 양도세·거래세 체제도 지금 개편하는 이런 시점에 이 제도는 맞지 않다, 또 부부 별산제도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세소위에서 집중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세제와 관련 되어서요……

위원님, 기업이 여러 가지 정상적인 경영활동 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될까 봐 굉장히 많이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개인유사법인에 배당간주 세제를 도입한 이유가 사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1인 주주법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에 6개가 1인 주주법인일 정도로.

그래서 정부로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있는 법인이 주 대상이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 왔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 적극적인 사업법인, 즉 수동적인 수입이 전체 수입의 일정수준 이하인 법인

PREVIEW

이 하는 2년 내의 투자, 부채 상환, 고용, R&D는 전부 다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기업활동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해당이 안 되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1인 주주법인에 대해서 이 배당간주 세제를 적용하고자 할 생각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실제적으로 배당간주 세제가 부과되지만 나중에 실배당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차감이 되기 때문이 이중적으로 배당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것이 결국은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를 저해해서 재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SAMPLE

행정안전위원회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563호



김철민

선 거 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6 제안
2020.09.10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11.05 상정/ 축조심사

제안이유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그렇지 않은 비(非)장애인 유권자처럼 온전히 행사되기 어려움.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수화·자막 관련 규정 현황

내용	조문	비용부담	비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70	후보자	수화, 자막방영 규정(동조⑥)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71	후보자	§70⑥ 준용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72	방송시설	수화, 자막방영 규정(동조②)
경력방송 (후보자 사진·성명·기호·주요 경력 등 알림)	§73	한국방송공사	§72② 준용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0	후보자	§72② 준용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70	후보자	§72② 준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 포함)	§70	후보자	수화, 자막방영 규정(동조⑫)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70	후보자	§82의2⑫ 준용
정당의 정책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선거기간)	§70	후보자	§82의2⑫ 준용

※ 김철민의원안 도입 시 음영처리된 부분만 수어, 자막방영이 의무화되고 이인영의원안 도입 시 상기 모든 내용에 의무화 적용

SAMPLE

관계기관의견

국회입법조사처

방송광고 등에 대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여부는 비용부담자인 후보자, 방송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 선택의 자유,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됨.

주요발언

전문위원 장지원

김철민 의원안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현행은 '자막 방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안은 공직선거법상 수화·자막이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도입 시 음영 처리된 부분만이 수어·자막 방영이 의무화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이인영안 도입 시 상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인영 의원안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송광고 등에 대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여부는 비용부담자인 후보자, 방송시설, 국가·지자체의 부담 증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사항으로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수화를 한국수화언어, 약칭하여 '한국수어'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상 용어인 '수화'는 '한국수화언어(약칭하여 한국수어)'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다만 자막을 방송법상 용어인 '폐쇄자막'으로 고치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고, 한국방송협회에서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정부 측의, 선관위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안처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부분도 살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것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편성·보도의 자유 그다음에 재정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과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산 소요나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까, 추가 소요비용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선거과정에서 적용됐을 때 하는 부분들까지는 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아니, 현재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해야 되는 의무규정으로 바뀌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 부분은……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지금 차장님 말씀은 이걸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법에 규정되면, 제도로 도입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의외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양기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각 선거구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자료 3쪽에 보시면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에 1인 60분 기준해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이 당시에 산출했을 때 가격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건데 그만한 수어통역사, 한국수어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그러면 일단 선관위 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기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비용은 후보자가 내는 거예요, 정당이 내는 거예요, 선관위가 내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비용부담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선거공영제처럼 일정 요건에 충족되면 보조금 반환을 받아갈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 주고 반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건지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여기 일례로 보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토론자 비용 30만 원 곱하기 2하면 60만 원 아니에요, 60만 원. 그렇지요? 그게 253개 선거구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방금 차장님 말씀대로 개인 부담을 하되 똑같이 10%, 15% 보상받는 사람들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후보자에게 내라 그래도 다 선거비용에서 내고 그런 다음에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는 다 하는 거고 지방선거할 때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안 하고 대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만 하잖아요.

그리고 수어통역사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그쪽 분야에서 더 육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용판 위원 (국민의힘)



특별히 저는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어통역 관련한 협회가 각 자치단체마다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1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방송협회, 이게 방송을 하게 되면 아마 방송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텐데 그래서 방송협회는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 같은데 이 부분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입법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후보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방송공사나 방송시설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선관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 부분을 반환시켜 줘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방송시설 주관해서 경력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방송사가, 방송시설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방송협회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저도……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정의당)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님 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가 있고 김철민 의원님 안은 과태료 부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거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특별한 의견 없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에 그것은 이행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

약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과태료 부과는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에 나중에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벌칙규정에 과태료 분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 이 부분은 사무차장님, 그게 아니라 방송사에 부과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명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저희들 법에 위반돼서 과태료를 부과대상하는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고 선거에 관여되는 방송사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그러면 후보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비용 부담 주체를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또는 방송시설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의무이행 강제규정으로,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통과시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장지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면 2페이지 도표를 보면 김철민 의원안은 음영 부분입니다. 후보자가 비용 부담하는 파트만 의무화가 돼 있고 이인영 의원안은 이 표에 있는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고 비용 부담이 방송시설, 방송사에 부담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인영 의원안처럼 다 포함하는 걸 통과시키자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김철민 의원안을 말씀하신 건지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이게 김철민 의원안은 이인영 의원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민 의원안은 방송광고만 수어방송을 의무화시킨 것이고 이인영 의원안은 여러 가지 같이, 방송광고뿐만 아니라 후보자 방송연설 그리고 경력방송 그리고 초청토론회까지 수화를 의무화시키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 안 되면 선관위에서 이것 꼭 이렇게 급하게 통과 안 시켜도 되니까 이 안을 가지고 선관위가 실무적으로 이인영 의원안하고 김철민 의원안을 가지고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내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의 내용에 대한 거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선관위가 실무에 맞게 정리를 해서 갖다 주면 다음 소위에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그러면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문이나 정리하는 것을 선관위에서 정리해 가지고 다음 소위에 제출해 주시면 그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AMPLE

행정안전위원회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524호



박용진

선 거 구 서울 강북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6 제안
2020.09.10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11.05 상정/ 축조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 6. 30.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참고자료

헌재 2016.6.30. 2013헌가1 결정 중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부분

[결정요지]

1.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

[이유]

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금지조항 부분)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4. 5. 29. 2012헌마515 참조).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 따라서 먼저 '언론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언론인은 사전적 의미로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따위의 언론기관에 관계하여 언론으로써 업(業)을 삼는 사람'을 뜻하고, 언론기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취재하여 기사로 작성하고, 때로는 의견을 첨가하여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통신사 따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법상 관련조항에서 언론기관(언론매체, 언론사 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제8조는 제목에서 '언론기관'을 규정하고, 그 범위로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나열하고있고,제8조의3제3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정기간행물 등'으로 지칭하고,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를 '언론사'로 지칭하고 있다.

SAMPLE

이어서 제8조의2 제2항은 위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방송사'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언론매체'를 언급한 조항도 있는데 그 범위는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4조).

위와 같이 법은 다수의 조항에서 언론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 '인터넷언론사', '정기간행물 등', '방송사', '언론사', '언론기관', '언론매체'와 같은 용어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금지조항의 하위 법령에 규정될 언론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떨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언론매체(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언론사 등)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같은 언론매체 내에서는 어느 기준으로 설정될지, 외형적인 사항과 매체의 실질적인 컨텐츠 중에서 무엇이 고려될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매체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적 범위 내지 업무 범위의 측면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조항에서는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제8조,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3항)' 또는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제97조 제2항)'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와 같은 표현에 더하여 법의 입법목적을 종합 판단하면 경영 기타 편집, 취재, 집필과 같이 언론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이라는 점은 일단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언론매체의 특성에 따라 업무 범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객원기자와 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금지조항은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는 언론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주요발언

전문위원 장지원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사항으로서 박용진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복합하니까 20쪽 관련 조문을 보고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해서 5호에 보면 '제53조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조 8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제53조제8호로 가면 53조는 다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된다' 하면서 그 8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53조에 따라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60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60조 5호에, 53조 8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8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해서 백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되는데 위임하지 않기 때문에 60조 5호 부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제60조제5호에서 8호를 삭제해서 7호로 대체하는, 즉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추가로 하나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백지위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53조 8호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언론인이 53조 8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마찬가지로 백지위임을 통해서 위헌판결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53조제8호도 수정하실 수 있는 게 하나의 선택 요인입니다.

이 말씀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53조 8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부분이 백지위임되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보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실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 말씀드렸으며……

그러고 나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60조제5호에서 제8호를 제7호로, 즉 8호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0조에서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번 기회에 53조도 수정하실지는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선관위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60조뿐만 아니라 53조까지 같이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직접적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조문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시에 저희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문제로 지적받은 조문과 같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아,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정의당)



동의합니다.

오영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동의합니다.

김용판 위원 (국민의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수 (국민의힘)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2952호



소병훈

선 거 구 경기 광주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8.13 제안
2020.11.0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11.11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안이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도 있고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종전(1993. 8. 12. 이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하여 대지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을 둠.

이는 종래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 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최근 판례는 "법률에 규정된 주택단지조성사업은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전제하므로 시행령 별표 1의 부과 대상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이 부과대상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입법취지와는 달리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4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적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하려는 등 그간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규정한 제5조제1항제1호에 주택건설사업을 명시(안 제5조제1항제1호)

i) 현행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판례에서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

ii)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제1항제1호에 주택건설사업을 명문화함.

iii) 부과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명시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였던 입법취지대로 제도 운영이 가능하여,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사업을 법에 명시(안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신설)

i) 현행 부과제외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42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최근 판례에서는 훈령에서 규정된 부과제외사업은 인정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봄에 따라 법 적용에 혼란이 야기됨.

SAMPLE

ii)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감면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부담금 감면사업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함.

iii) 부과제외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안 제29조제1항)

i)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200만원 이하"로 이는 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상한액의 변동이 전혀 없어 유사한 타 과태료와 불평등이 발생하는 등 법제처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 지침」에도 현저히 어긋나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ii)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화시켜 타 제도와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기관의견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가 없더라도 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

국회입법조사처

개정안은 타 제도와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주요발언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얼마나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의회를 무시했는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 부과 대상은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던 법률유보의 원칙을 반해 가지고……

처음에 이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법 제1조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93년도 시행령에 '아파트개발사업 대지조성의 경우에 한한다' 해서 주택사업은 부담금을 못 물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93년도 8월 12일 날 바꿔 버렸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다 부담금을 냈습니다, 몇십 억씩. 그런데 법률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법원 2015년도 11월 26일 날 판례는 이렇게 써 놨습니다,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부담금 면제를 결정한 겁니다. 이 백주에 행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라 국기를 문란한 반국가적 행위예요.

법을 개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대지조성공사 수반한 부담금 건수는 108건에 966억이고 그중에 95건에 785억이 징수되었고, 대지조성공사 미수반 이것은 부담금을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72건에 522억을 부과해서 66건 469억의 돈을 받았어요.

첫째로 이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토부는 불법을 이유로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징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령을 위반해서 귀하에게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법에 정해지면 지금까지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잘못해서 부담금

SAMPLE

을 잘못 부과했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할 건지를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은 당장 폐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거냐, 의회에서 전액 반환하라고 부대의견으로 달 건지 아니면 그게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일단 고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 줘야 됩니다. '국가가 불법으로 여러분에게 부담금을 물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앞으로 반납하겠다'라든지 이런 선행 조치도 하지도 안 하고 지금 들고 와 가지고, 시행령에 토지하고 주택 두 부분 다 개발부담금을 물렸는데 이것을 법에 올려 달라고 들고 온 겁니다.

이 법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는 당연히 잘못을 자백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행정부에서 월급 주고 했더니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시행령이나 훈령 따위로 그렇게 부담을 해도 되는 겁니까?

따라서 이 법안은 즉시 폐기하고 지금 부과된 대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피해를 구제할지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한 다음에, 법안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만들 거니까 그 구제책부터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1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 처분에 대해서 9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발부담금은 땅값이 오르는 경우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데 토지에 대한 개발이 만약에 수반되지 않더라도,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더라도 주택을 짓는 건축행위만으로도 개발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은 지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입법 불비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 없는 주차장, 나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갑니다. 그런 현실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입법적으로 이 규정이 안 됐으니 그런 문제가 생겼고, 결과론적으로 이미 지금 469억 원을 부과받으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입법 미비로 인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송구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과거에는 저희들 훈령으로 해서 면제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그동안 우리가 입법 불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 년에 법령, 법률 정비를 통해서 해소한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미 지금 부과받으신 469억 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소급해서 해 버리면 이분들한테 돈을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시면 5년으로, 저희들 당초 안대로 5년으로 소급해서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법 시행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만약에 소송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469억 원은 저희들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런데 차관님.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예.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법에 근거 없이 부담금을 그냥 물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법에 근거 없이 부담금 물렸다는 말씀을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시냐고.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런데 이게 법률유보가 돼 있는 겁니까? 법률에서 령이나 규칙에 유보가 돼 있어요? 돼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법으로 옮기는 건지, 그동안에 유보가 전혀 없는 건데 령이나 규칙으로 부과를 했던 건지 그것은 명확히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저희들 93년 6월 달에 그때 법률을 개정할 때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밀어 놓은 겁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수반된다고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예.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예.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지금 대지조성하고 그것 수반 안 되는 것에, 거기에 포함됩니까?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그래서 나대지에다가 거기다가 주택을 짓든지 다른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의 지목은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이 이게 완전히 불비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넣어라, 법률에다가 넣어라 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하는 겁니다.

김교흥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런데 차관님.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예, 김교흥 위원님.

김교흥 위원 (더불어민주당)



다 좋은데 원래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정의가 있잖아요. 원래 법률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로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예.

김교흥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이것도 개정해야지요.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을 해석할 때 유추해석이라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토지뿐만 아니라 아까 차관님 말씀한 대로 기타 주변의 뭐 지대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올려서 지가가 상승해서 개발이익이 상당수가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뭘 구체적으로 넣어서 이것부터 개정을 해야지.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개념이 딱 정리가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김수상



토지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도 개발이익의 정의에 대해서 개발사업의 시행뿐만 아니라 토지이행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분을 초과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하고 있어서 단지 토지에 한정된 개발사업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주택 건설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사업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개인이 토지 형질변경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짓는 경우에도, 그것은 이제 주택까지 지은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지 개발과 같은 LH가 사업을 해서 중간에 대지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단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돼서 그 뒤쪽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게 되면 개인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주택까지 다 짓는 부분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분하고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것 법원에서 작년에 왜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김수상



그런데 이제 시행령에 주택 건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이제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김희국 의원님.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김수상 국장님, 국장님은 법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된 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라 했는데 왜 주택에 부과했느냐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일반 다른 법을 끌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부담금이 부과된 게 아니에요. 행정행위는 요 법에서 정한 엄격한 법 그대로 기속행위로 해야지 당신들 자유 재량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 토지와 주택 중에서 토지에 한정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주택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택도 부과하는 것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담금 적용 대상은 토지예요.

이해가 됩니까?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그런데 위원님, 1999년 12월 16일 날 대법원 판례는 안 그렇습니다.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2015년도 판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예, 2015년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으니 법으로 상향 조정해서 넣는 거고요.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말대로 유추해석하면 여러분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담금을 부과한 거예요. 폐기 처분하고 다시……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호 의원안 있지요 2페이지 개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인 의견인 것 맞습니까?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예, 이게 해결돼야, 나머지는 전부 사족들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부담금을 해 줄지 말지 의회에서 결정하는……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좀 더 큰 범위의 아까 말씀하신 그림, 이거야말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택에 대해서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다 갖다 붙일 건지 새로 만들 건지, 다른 데 비슷한 게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그림을 그려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의견 좀 내 주시고요.

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 판례, 최근에 나왔던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판례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런데 5년 임대 이런 것 봐도 대법원 판례가 전부 다 하여간에 그동안 국토부의 프랙티스하고는 거꾸로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이만저만한 혼란이 있는 것 아시지요?

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예,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즉시즉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법을 치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토교통부1차관 윤성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아우성이 생기면 즉시 그 대응을 해 줘야지, 그것 지금 다 누적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토 소관 법률이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느슨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 뭐 판례 자꾸 말씀하셨는데 우리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의견 내 주세요. 국토부의 의견 내 주시고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은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SAMPLE

B&B Report

Ⅲ.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SAMPLE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PECIMEN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696호



김영식

선 거 구 경북 구미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9.09	제안
2020.11.13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 이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언론 순위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외부의 압력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자유 및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39조 신설).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의무 등

조항	내용
제3조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 ②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 취재 정보 공표할 자유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할 의무
제4조	①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 ②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 보장
제39조 (신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률

신문법상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비교

조항	내용
○ 발행인(제2조) –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 ○ 편집인(제2조) –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 기사배열책임자(제2조)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 언론·편집의 자유 등(제3조, 제4조)	

SAMPLE

○ 기사와 광고 분리 의무(제6조) – 편집인	○ 기사와 광고 분리 의무(제6조) – 기사배열책임자
–	○ 준수사항(제10조) –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책임자 공개 – 기사 공급자의 동의없이 기사의 제목·내용 수정 금지 등
○ 필요 게재사항(제21조) – 해당 신문에 명칭, 전화번호, 등록번호, 발행인, 편집인 등 공표 의무	–

관계기관의견

국회입법조사처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SAMPLE

주요발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15개 어종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외의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냉동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AMPL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334호



어기구

선 거 구 충남 당진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9.23	제안
2020.11.13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이상(상장사 기준)일 경우, 상당히 유리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류 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고 있으며 계열사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여 특수관계인 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비율 30퍼센트 제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자사의 중소협력업체 또는 중소선사 등에게 자의적인 계약변경과 저가(덤핑)의 운임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중소협력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하는 등 물류시장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충분한 화물차나 선박 보유도 없이 하도급을 통한 사업영위를 해오고 있고 실제 사업이 아닌 사실상 '통행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류산업의 경쟁력, 특히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동일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연 거래총액이 연 매출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외) 등에 대하여 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8 신설).

관련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SPECIAL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SAMPLE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SAMPLE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운법**」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견

해양수산부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민간영역인 해운산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과징금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 있는 외국계 물류회사는 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

부담금의 부과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는데 대기업 자회사 중 해상물류자회사에만 산업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공정성에 위배되며,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과징금'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하도록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임.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제2103803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9.11	제안
2020.11.12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맞추어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고용보험료의 산정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와 노무 제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안 제48조의3 신설)

i)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ii)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보험업무의 대행(안 제48조의4 신설)

i)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주소,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ii)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 사례

□ **일본**

○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이나 '업무취급요령'에 생명보험회사 외무원*, 임원, 가사사용인의 피보험자 여부에 대하여 규정

* 직무의 내용 및 복무가 사업주로부터 지배를 받고, 회사에 대한 손해나 성적 불량에 기해 일반 사원과 같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받는 경우

□ **프랑스**

○ 임금근로자는 의무가입이고, 특별한 업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으로 일부 예외를 규정

* 방문위탁판매원, 기자, 부동산중개인, 파견근로자, 재택근로자, 공연예술가 등 16개 직종

□ **독일**

○ '취업'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 결정하며, 취업은 근로관계에서 자영업이 아닌 근로이며,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여부, 지시권자의 노동조직에 소속여부가 판단의 핵심임

– '외관자영업자'*로 확인되면 의무가입자가 되고, 이후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 소송 청구 가능

* 위임인을 위하여 일을 수행하지만 자신의 근로자는 고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외형적으로는 자영업자이나 위임인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독립성은 결여

□ **영국**

○ 사회보험 가입대상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과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취업자' 개념을 사용

– 취업자인지 여부는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조세청에서 판단하며, 우선 근로자로 판단하고 개인사업자임은 종사자가 증명

□ **스페인**

○ 비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사회보험제도(Reta)에 가입하며, 통합보험(건강, 모성, 상병, 노령, 유족)의 의무가입이고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

관계기관의견

경영계

① 특고의 경우 자영업자와 다르지 않고, ②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③ 특고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 5.5%에 불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고, ④ 산재보험의 경우 특고와 근로자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특고가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나 특고의 산재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1/2 공동부담, ⑤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은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거나, 현행 자영업자처럼 임의 가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임.

SAMPLE

환경노동위원회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045호



한정애

선 거 구 서울 강서구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8.19 제안
2020.11.12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재해자의 대부분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관련 서류 및 절차의 누락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96조제1항제8호 신설, 제116조제2항 및 제12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내용

법령명	조 항	내 용	위반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500만원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지원)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6조 (이직의확인)	②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300만원이하 과태료

국토교통위원회

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256호



박재호

선 거 구 부산 남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8.25 제안
2020.11.06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안이유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동차보유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수용하게 되는 구조임.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어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험가입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제안이유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18부터 제39조의29까지 신설).

참고자료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문	주요내용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 전문심사기관의 진료수가기준 적합여부 심사 이의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함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변경 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 제23조의2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운영, 심사·결정 절차 관련 규정⇒삭제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재원으로 활용
제39조의18(자동차보험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소속 : 국토교통부(사무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분쟁조정대상 : 진료수가/정비요금/기타 보험금등 관련 분쟁
제39조의19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5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1인 포함) -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자동차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임기 : 2년(연임 가능)

SAMPLE

제39조의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사유 ◆ 위원 및 그 배우자·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 위원이 해당 안건 관련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제39조의2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39조의26(위법사실의 통보)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및 권한 규정 ◆ 회의 소집 및 의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관계서류 열람 및 조사권한 ◆ 위법사실의 통보 ◆ 조정신청 통지 ◆ 처리기간 ◆ 의견 청취
제39조의27(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구성 : 진료수가 / 정비요금 / 기타 보험금 –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의 효과 : 위원 전원의 합의의결 사항 →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봄
제39조의28(조정의 효력) 제39조의29(비용의 분담)	– 조정의 효력 : 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 합의 성립된 것으로 봄 – 비용분담 : 감정·진단·시험 등 비용은 신청인 부담(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름)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와 개정안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비교

구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현행)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개정안)
소속	보험회사등·의료기관 자율 운영	국토교통부 소속
업무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분쟁 심사·조정 – 진료수가기준 조정 건의 – 업무 관련 조사·연구	–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 조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보험금등으로 지급되는 정비요금 ◆ 기타 보험금등 – 진료수가기준 개정 시 의견제시
구성	– 총 18인 ◆ 보험업계 추천 6인 ◆ 의료기관 추천 6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인 (현재 구성인원) ▷ 국토교통부 공무원 1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1인 ▷ 한국소비자원 1인 ▷ 근로복지공단 1인 ▷ 변호사 2인	– 총 15인 ◆ 다음 각 호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자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임기	2년 (연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운영 비용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정부)

SAMPLE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조정기구

구분	진료수가 관련	정비요금 (수리비 관련)	보험금 등 자동차보험 전반	과실비율 관련
관련 기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자동차보험정비 협의회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수행 업무	–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 심사·조정 – 진료수가기준 조정 건의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 공임 등)의 산정 및 관련 조사·연구	금융 관련 분쟁 심의·조정	보험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하여 과실분쟁 합의·심의
설치·운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의2 ('20.10. 시행예정)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위원회 인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관계기관의견

국토교통부

현재 자동차 사고 보험금과 관련된 다수의 분쟁조정기구가 있고, 여러 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절차, 예산 등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과 같이 민간에서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 상품운영 관련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손해보험협회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분쟁조정기구와의 중복이 우려되고, 소관부처와 근거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체계를 고려할 때 단순히 통합된 분쟁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인 정비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대한의사협회

기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경우 단순히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에 대한 2차 이의신청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분쟁 당사자(의료기관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교통부 소속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으로 보임.

한편, 위원 구성에 있어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확보되도록 공익위원과 의료전문가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SAMPLE

Policy & Business Report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의원회관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http://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국회 일정표

11월호는 2020.10.15.부터 2020.11.14.까지 상정된 법률안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일자 / 위원회	10월 15일	10 월 16일	10 월 19일	10 월 20일	10 월 21일	10 월 22일	10 월 23일	10 월 26일	10 월 27일	10 월 28일	10 월 29일	10 월 30일	11 월 2일	11 월 3일	11 월 4일	11 월 5일	11 월 6일	11 월 9일	11 월 10일	11 월 11일	11 월 12일	11 월 13일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국회본회의										382회 제10차 ●	382회 제10차 ●											
국회운영위원회												●			●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	●																				
행정안전위원회	●		●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									●							
환경노동위원회	●		●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SAMPLE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SAMPLE

SAMPLE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